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7
----------	-----

제출년월일 : 2017.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통보한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별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별첨

나. 예산조치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09.25. ~ 10.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신규허가 사업소 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 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이상 ○ 사 무 실 : 18㎡이상 ○ 주 차 장 : 23㎡이상

관계법령 발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개정 2017. 7. 1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 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생략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 아) 생략

2) ~ 9) 생략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 바) 생략

나. ~ 라. 생략

2. ~ 3. 생략

<붙임 2>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2540